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4-4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년 4월 일

제출자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상 소액채납액 가산세 면제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제4항에서 규정한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금액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, 제55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3. 8. ~ 3. 28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사전심사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후단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 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5만원 미만 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

□ 지방세기본법(*24.1.1.시행, 법률 제19859호 2023. 12. 29. 일부개정)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②~⑨ (생략)

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 ①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,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(이하 “과소납부” 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(이하 “초과환급” 이라 한다)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, 과소납부분(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(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,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(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초과할 수 없다.

<개정 2017. 12. 26., 2018. 12. 24., 2020. 12. 29.>

1.~3. 생략

4.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

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(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가산세는 제외한다)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

②~③ (생략)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설 2020. 12. 29., 2023. 12. 29.>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'20.12.29. 일부개정, '24.1.1.시행)

제34조(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)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 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.

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 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 부칙(법률 제17768호, '21. 12. 28. 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~4. 생략

5. 제2조제1항제14호·제22호부터 제24호까지·제26호·제33호, 제34조제1항제12호, 제35조제2항,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55조제1항·제2항·제4항·제5항, 제56조, 제71조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: 2024년 1월 1일